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03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발의자	박미효의원	발의연월일	2019. 04. 29.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경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임.
-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안 제4조)
-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다.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

장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 의견

1. 제정 배경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¹⁾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이에 해당됨.

<표 1>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²⁾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요원 범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간호사(2년이상 경력), 간호조무사(3년이상 경력 및 교육이수),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 한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제5호 장기요양요원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정리

-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양보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영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임.
- 그러나, 영양보호사를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바라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등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며, 영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한편, 서초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총 65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영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4,355명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2> 서초구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현황(2019년 4월 기준)

구 분	시설 수	장기요양요원 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5개소	220명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7개소	85명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53개소	4,050명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음.

※ 서울시 자치구 : 5개(강동구, 송파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 주요 내용 검토

1)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5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임.

2)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근거 규정으로서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 세부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주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참고한 것으로 사료됨.

3)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6조)

-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4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안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각종 계획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됨.

4)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안 제7조, 제8조)

-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이 근로조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현장에서 장기요양요원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인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